

군산시 공고 제2026-1978호

군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
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를 의무 사항으로 하고있어 존속기한 규정 삭제 및 관련
규정의 명칭이 변경되어 그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규정 삭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 단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
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제15조(관계규정의 중용 등)

-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건축경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전화: 063-454-3611, FAX: 063-454-6034, 전자우편: cnho12@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광고물계(063-454-3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군산시장 귀하

붙임2

신 · 구조문 대비표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까지로 하되 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군산시 공고 제2026-2003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필수 자치법규 미마련 조문은 신설하고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을 개정하여 법령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2025. 12.)에 따라 직위별로 구분하고 있는 관사를 일원화하고, 운영 방식을 정비하여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초지법」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 요율 규정 신설(안 제26조)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사용료·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안 제33조)
- 직위별로 구분하고 있는 1·2·3급 관사를 일원화(안 제48조)
- 직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사용 대상자, 사용허가·취소, 사용료 부과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안 제50조 및 제51조)
- 시설관리 및 개인사용 목적에 따라 운영비 부담 주체 명확화(안 제54조)

- 투명성 확보 및 주민 통제 강화를 위해 관사 운영 현황 공개(안 제58조의2)

3. 입법예고 기간 : 2026. 8. 18.(화) ~ 9. 7.(월) / 20일간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우편)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3층 회계과)

(전화) 063-454-2382 / (FAX) 063-454-6007

(전자우편) ay1808@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회계과 재산관리계(063-454-23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대부료등의 납기)”를 “(대부료 등의 납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년도에는 사용 개시일”을 “연도에는 사용개시일”로, “2차년도 부터”를 “2차년도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4조제7항”을 “영 제14조제8항”으로, “6회”를 “12회”로, “분할 납부하게”를 “분할납부하게”로 한다.

제48조 중 “시장·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을 “군산시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사 사용 대상자는 직무 관련성 및 거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으로 한다.

1. 다른 기관에서 군산시로 일시 인사 발령된 직원
2. 신규임용 또는 전입 등에 따라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3. 그밖에 시장이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관사운영비(공공요금, 관리비 등)의 절약과 성실한 납부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고 단, 3급 관사의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근무지 이탈금지 지역(연륙되지 않은 도서지역, 이하 “도서지역”이라 함)의 관사에 한한다.”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 장식물”을 “기본 비품(가전, 가구 등)”으로, “경비(다만, 1급·2급 관사에 한함)”를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9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 제3호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주민공개) ① 시장은 관사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사 운영 현황을 매년 1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9조 중 “내지 제58조”를 “부터 제58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제54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의2 및 제59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략) <신설>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33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제33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 -----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 ----- 2 차년도부터----- ----- -----.
② 영 제14조제7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사용료	② 영 제14조제8항 ----- ----- ----- ----- ----- ----- 12회----- ----- 분할납부하게

또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시장 관사
2. 2급 관사 : 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신 설>

-----.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관사) -----

군산시 소속 직원-----

-----.

<삭 제>

제50조(사용허가) ① -----

-----. <단서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관사 사용 대상자는 직무 관련성 및 거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으로 한다.

1. 다른 기관에서 군산시로 일시 인사 발령된 직원

2. 신규임용 또는 전입 등에 따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고 단, 3급 관사의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근무지 이탈금지 지역(연륙되지 않은 도서지역, 이하 “도서지역”이라 함)의 관사에 한한다.

1. ~ 2 (생략)

3. 보일러 운영비(다만, 1급 ·

라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3. 그밖에 시장이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제51조(사용책임) -----

- 소속 직원-----

-----.

1. ~ 3. (현행과 같음)

4. 관사운영비(공공요금, 관리비 등)의 절약과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운영비의 부담)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

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

다.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2급 관사 · 3급 관사중 도서지역의 관사에 한함)

4. 응접세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다만, 1급 · 2급 관사에 한함)

5. 전기요금(다만, 1급 · 2급 관사 · 3급 관사중 도서지역의 관사에 한함)

6. 전화요금(다만, 1급 · 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다만, 1급 · 2급 관사 · 3급 관사중 도서지역의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다만, 1급 · 2급 관사에 한함)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생략)
3. 시설의 보호 · 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

4. 기본 비품(가전, 가구 등)---

경비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53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

-----.

1. -----소속 직원-----

2. (현행과 같음)

3. -----

-----소속 직원-----

는 경우
<신 설>

제59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
 택에 대해서는 제46조 내지 제5
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의2(주민공개) ① 시장은
관사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
를 위해 관사 운영 현황을 매년
1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
여야 한다.

② 공개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제59조(준용) -----
 ----- 부터 제58조의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기획행정국 회계과장 서정석
연락처	(063) 454 - 2350

군산시 공고 제2026-2004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2025. 12.)에 따라 관사 이용대상 및 관사 운영현황 공개에 대한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사 사용 가능 대상 명확화 및 관사 운영 현황 공개 시 서식 마련
(안 제35조 및 별지 제24호의2, 3, 4 서식)

3. 입법예고 기간 : 2026. 8. 18.(화) ~ 9. 7.(월) / 20일간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우편)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3층 회계과)

(전화) 063-454-2382 / (FAX) 063-454-6007

(전자우편) ay1808@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회계과 재산관리계(063-454-23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48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을 “제50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4호의2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4호의3서식)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례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공개 세부 사항은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 주 자 직 성명

3. 입 주 년 월 일

4. 가 족 수 (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군 산 시 장 귀 하

[별지 제24호의3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것을 서약합니다.

1.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 한다.
2. 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군 산 시 장 귀 하

[별지 제24호의4서식]

관사 운영 현황

□ 관사 현황 : 총00개

○ 소유 : 00개 / 단독00, 아파트00, 빌라00

○ 임차 : 00개 / 단독00, 아파트00, 빌라00

□ 예산지출내역 : 총000원

○ 취득 : 0000원(00개), 임차 : 0000원(00개)

○ 시설유지관리비 : 000원 ※ 리모델링, 비품구입 등

○ 운영비 : 000원 ※ 수도, 가스, 통신비 등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8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35조(관사관리) ① ----- 제50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직원 -----.<단서 삭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4호의2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4호의3서식)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④ 조례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공개 세부 사항은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의한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기획행정국 회계과장 서정석
연락처	(063) 454 - 2350

군산시 고시 제2026-108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4.

군 산 시 장



○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별 도 첨 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063-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2026. 8. 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및 폐지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및 폐지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 로 명 주 소 고 시 내 역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512-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포면 서왕길 84-6	20260803	건물 신축	20100125	마을명칭에서 인용	
2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화등리 95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화등길 79-50	20260731	건물 신축	20100125	화등리의 중심도로 역할	
3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387-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길 40-2	20260730	건물 신축	20090508	섬이름 이용	
4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동 505-34, 505-6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쌍천로 7-24 (개정동)	20260729	건물 신축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5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200-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여방2길 112	20260724	건물 신축	20070528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군산시 고시 제2026-115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군산종합운동장) 결정(변경)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26년 8월 12일

**1. 실효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가. 도시계획시설(군산종합운동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군산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사정동 131일원	188,700	감) 35,346	153,354	건고228호 ('86.5.23.)	

나. 도시계획시설(군산종합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88,700	감) 35,346	153,354	100.0	
운동시설	70,816.2	-	70,816.2	46.18	
편익시설	275	-	275	0.18	
녹 지	57,463.3	감) 30,946	26,517.3	17.29	
도 로	40,488	감) 2,188	38,300	24.98	
주 차 장	17,980.5	감) 1,661	16,319.5	10.64	
광 장	1,677	감) 551	1,126	0.73	

2) 조성계획(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세부시설명	부 지 면 적 (㎡)			건 축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188,700	감) 35,346	153,354	20,216.2	34,181.7	-	-	20,216.2	34,181.7	
운 동 시 설	소 계	70,816.2	-	70,816.2	19,984.2	33,891.7	-	-	19,984.2	33,891.7	
	주경기장	29,092	-	29,092	5,355	6,472	-	-	5,355	6,472	
	야구장	22,164	-	22,164	7,209	13,176	-	-	7,209	13,176	
	실내체육관	6,284	-	6,284	4,469	10,368	-	-	4,469	10,368	
	테니스장	8,131	-	8,131	164	164	-	-	164	164	
	게이트볼장	2,347	-	2,347	2,024	2,020	-	-	2,024	2,020	
	족구장	986	-	986	0	0	-	-	0	0	
	씨름장	248.5	-	248.5	248.5	248.5	-	-	248.5	248.5	
	월명체육센터	486.7	-	486.7	486.7	1,416.2	-	-	486.7	1,416.2	
편 의 시 설	농구장	1,077	-	1,077	0	0	-	-	0	0	야외
	소 계	275	-	275	232	290	-	-	232	290	
	화장실(1)	116	-	116	95	153	-	-	95	153	
	화장실(2)	109	-	109	88	88	-	-	88	88	
	경비실	50	-	50	49	49	-	-	49	49	
녹 지	소 계	57,463.3	감) 30,946	26,517.3							
	파고라(1)	164	-	164							
	파고라(2)	71	-	71							
	파고라(3)	15	-	15							
	파고라(4)	44	-	44							
	모정	16	-	16							
	가족놀이공간(1)	2,840	감) 2,840	-							
	가족놀이공간(2)	1,380	-	1,380							
	가족놀이공간(3)	771	-	771							
	가족놀이공간(4)	727	-	727							
	휴식공원	33,745	감) 24,203	9,542							
	녹지	17,690.3	감) 3,903	13,787.3							
도 로	소 계	40,488	감) 2,188	38,300							
	진입로	13,355	감) 2,188	11,167							
	내부도로(1)	2,674	-	2,674							
	내부도로(2)	3,310	-	3,310							
	내부도로(3)	772	-	772							
	내부도로(4)	10,793	-	10,793							
	내부도로(5)	5,763	-	5,763							
	내부도로(6)	3,821	-	3,821							
주차장	소 계	17,980.5	감) 1,661	16,319.5							
	주차장(1)	3,783	-	3,783							
	주차장(2)	1,089	-	1,089							
	주차장(3)	4,345	-	4,345							
	주차장(4)	2,839	-	2,839							
	주차장(5)	5,924.5	감) 1,661	4,263.5							
광 장	소 계	1,677	감) 551	1,126							
	야외공연장	1,144	감) 18	1,126							
	광장	533	감) 533	0							

2. 실효일자 : 2020. 7. 1.

3. 실효사유 :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

4. 지형도면 : 게재 생략

5. 관계도서는 군산시 도시계획과(☎ 063-454-350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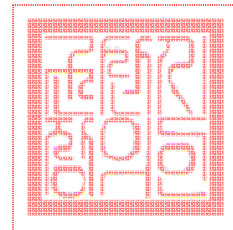
군산시 공고 제 2026-19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의거 소유자가 신청한 토지이동 신청(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및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대위신청건에 대한 등기완료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5.

군 산 시



1. 공고내용 : 지적공부 정리 등기완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아산리 ***-*, 채정* 외 1건
3. 공고기간 : 2026. 8. 6. ~ 2026. 8. 19. (14일간)
4. 공고장소 : 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기타사항
 -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지적관리계(☎063-454-3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공시송달조서 1부. 끝.

공시송달조서

순 번	토지 종류	동·리	이동전			이동후			성명	주소	송달사 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1	토지 분할	개정. 아산	104-5	전	307	104-5	전	198	채정* 김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아산리 ****-*	이사불명 폐문부재
						104-8	전	57			
						104-9	전	52			
2	토지 분할	개정. 아산	104-7	대	167	104-7	대	132	채정*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아산리 ****-*	이사불명
						104-1 0	대	35			

군산시 공고 제2026-1986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24-57호(2024.5.10.)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득하여 시행 중인 군산시 조촌동 671-1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조촌동 671-13번지 외 29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 나. 명 칭 : 동군산병원 증축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부지면적 : 14,463㎡
 - 나. 건축계획(전체)
 - 3동/지하1층~지상10층, 건축면적 5,988.41㎡, 연면적 27,689.04㎡, 건폐율 46.98%, 용적률 195.2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대표 이성규
 - 나. 주 소 : 군산시 조촌로 149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4. 5. 10. ~ 2026. 12. 31.(준공 2026. 8. 5.)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총 계				15,828	14,463			
1	조촌동	671-10	대	515	515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2	조촌동	671-13	대	4,724	4,703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3	조촌동	671-39	도	26	3	군 산 시		
4	조촌동	671-52	답	268	268	군 산 시		
5	조촌동	671-54	답	151	151	군 산 시		
6	조촌동	671-55	차	596	495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7	조촌동	671-56	도	73	73	군 산 시		
8	조촌동	672-9	전	397	397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	군산시 조촌동 671-13	
9	조촌동	672-10	차	727	727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	군산시 조촌동 671-13	
10	조촌동	672-11	대	151	151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	군산시 조촌동 671-13	
11	조촌동	672-12	차	509	509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	군산시 조촌동 671-13	
12	조촌동	672-24	전	562	155	군 산 시		
13	조촌동	672-27	전	155	155	군 산 시		
14	조촌동	672-28	차	240	240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	군산시 조촌동 671-13	
15	조촌동	672-29	대	37	37	군 산 시		
16	조촌동	672-31	전	74	74	군 산 시		
17	조촌동	672-32	전	393	393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	군산시 조촌동 671-13	
18	조촌동	672-33	전	451	451	군 산 시		
19	조촌동	673-2	도	916	222	국(건설교통부)		
20	조촌동	678-7	차	744	744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	군산시 조촌동 671-13	
21	조촌동	678-9	전	2,501	2,501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	군산시 조촌동 671-13	
22	조촌동	678-10	도	71	71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	군산시 조촌동 671-13	
23	조촌동	678-11	차	340	340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	군산시 조촌동 671-13	
24	조촌동	678-12	전	124	5	군 산 시		
25	조촌동	678-13	도	154	154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	군산시 조촌동 671-13	
26	조촌동	678-14	차	806	806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	군산시 조촌동 671-13	
27	조촌동	678-20	차	45	45	군 산 시		
28	조촌동	678-21	전	19	19	군 산 시		
29	조촌동	678-22	도	15	15	군 산 시		
30	조촌동	678-23	차	44	44	군 산 시		